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74호

##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이유

창원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3
----------	-----

발의연월일 : 2023. 7. 10.

발 의 의 원 : 문순규 ·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 김상현  
김영록 · 박해정 · 백승규 · 안상우 · 오은옥  
이우완 · 이원주 · 이정희 · 이종화 · 이천수  
정순옥 · 진형익 · 최은하 · 한은정 의원(19명)

## 1. 제안이유

창원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바.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

3.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갑질 피해 예방 홍보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보육교직원권익 보호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창원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보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